

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(I)

[법률 제9762호 신규제정 2009. 06. 09.]

내년부터는 전망 좋은 저수지에 관광단지 개발 가능

정부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「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「특별법」)을 6월 9일 공포하였다. 특별법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,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통해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

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개발사업,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, 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용도지역·지구 지정 과정에서 수행되는 토지적성평가 등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였으며,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35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인·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고,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.

농식품부 관계자는 “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일(2010.6.10)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,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·이용하여

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

-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2. “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”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.
 3. “주변지역”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 4. “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”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 5. “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”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·임대사업,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
 - 나.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, 집하장 설치사업
 - 다.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광농원사업,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
 - 라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
 - 마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
 - 바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설

- 치사업 및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
- 사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- 아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(이하 “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”이라 한다)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

제4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)

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 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·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
2.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·위치 및 그 면적
3.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

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5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·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
7.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8.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
9.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
10. 토지이용계획·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
11.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
12.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
13.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
1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
15.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계획의 승인 등)

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,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

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1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
3. 「주택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

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,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사업계획의 변경)

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의 지정 등

제7조(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의 지정)

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(이하 “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은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 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르며,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 부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 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)

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 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 제할 수 있다.

1.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 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
2. 사업시행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 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3.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

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행위 등의 제한)

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·자갈·모래의 채취, 토 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, 수산동식물의 포획·양식,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

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 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 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

1.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를 위하여 하는 행위

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·고시 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 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 집행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 조를 준용한다.

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◎

〈다음호에 제4장부터 계속 개제합니다.〉